

2011.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부분과 그 평가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서론

위 가이드라인은 원래 1976년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에 붙여져 나온 것이다. 그 후 1979년, 1984년, 1991년, 2000년 까지 여러번 개정되었고, 2010년 국내연락사무소 연례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작업 착수하기로 한 후에, OECD설립 50주년이 되는 2011년 5월 25일 위 개정안이 장관급 이사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위 2011년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인 34개국과 8개의 비OECD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페루, 루마니아) 총 42개국이 수락하였다.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 뒤에 붙여진 가이드라인의 구조를 보면 1. 전문, 2. 실제적인 규정, 3. 이행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규정은 개념 및 원칙, 일반정책,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주로 국내연락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전문, 실제적 규정, 이행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규정 순서에 따라 살펴본 후에 전체적으로 개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한국 상황에서 이번 개정이 갖는 함의를 이해관계자 별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¹⁾

1) 전문

1.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수락국은 OECD 가이드라인 이행에 있어 구속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국내법으로 규정될 수 있고 국제적인 (구속력 있는)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때에는 (기업에게도) 구속력이 미칠 수 있다.

2.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인 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계속 개정이 되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경제의 팽창과 서비스와 기술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진입한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3. 개발도상국에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급증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제 투자자로서의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7. 다국적기업들은 ('좋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증진해왔을 뿐 아니라, 다수 이해관계자 initiative 상황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의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일 해왔었다.

8. 정부들은 기업 활동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적 및 정책적 기본 틀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왔는데,

<OECD 가이드라인 실체적인 규정>

I. 개념 및 원칙

1.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좋은 기업의 행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적용가능한 법과 일치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도 일치한다²⁾. ‘기업의’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자발적이고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의해 (기업 역시) 규율될 수 있다.

2. 가이드라인은 많은 경우 국내법이 규정한 내용 이상을 다루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국내법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적 의무이다. 국내법과 가이드라인이 상충하는 경우 기업은 국내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4. (다국적기업의 개념과 관련해서) 다국적기업은 대개 한 나라 이상에서 설립된 기업인데, 경제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8. 정부들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관할 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활동 조건을 규정할 권리를 가지는데, 다국적기업이 수락국 뿐 아니라 제3국에 의해 상충되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정부’는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협력을 할 것이 권장된다.

II. 일반정책

A. 2.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해야(should) 한다.

A. 5. 다국적 기업은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금융 인센티브 뿐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규범 등이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

A. 6. 다국적기업은 모범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을 지지하고, 유지하고, 개발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기업 그룹 전체에 해당한다.

A. 10. (상당 주의의 범위와 본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국적기업은 리스크에 기반한 ‘상당 주의’를 이행해야 한다. 즉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A. 11과 12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 예방,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상당 주의’라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OECD 역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조세, 소비자 이익, 기업 지배 구조, 부패방지,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그러하였다.

2) 개정된 부분은 밑줄로 강조하였다. 개정된 부분은 발제의 편의를 위해 의역을 하였다.

A. 11. 다국적기업은 자기 자신의 활동activities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다루고 있는 사항들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

A. 12. 다국적기업이 (야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다국적기업의 사업상의 관계business relationship에 의한 operation, 상품,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도록 **노력해야seek 한다**(그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한 당사자entity의 책임이 사업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A. 13. 다국적기업은, 실행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하청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 협력업체들이 가이드라인과 양립하는 책임있는 기업 행동 원칙을 적용하도록 권해야 한다.

A. 14. 지역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engage 한다.

B. 일반정책과 관련해서 다국적기업이 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권장되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였는데, B. 1. 다국적기업은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존중을 통해 인터넷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

B. 2. '실행가능한 경우' 책임감 있는 공급망supply chain 관리에 대해 민간 혹은 다multi 이해관계자의 initiatives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것.

III. 정보공개

1.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 상태, 실적 뿐 아니라 소유관계 및 지배구조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정보가 적기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IV. 인권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국적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관련된 국내법들과 규정, 현지 국가의 국제적인 인권 의무의 틀에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다국적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다국적기업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하고, 자신이 연루된involved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

2. 다국적기업 자신의 활동 범위context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해야 한다.

3. 다국적기업은 자신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 사업상의 관계에 의해 자신의 operation, 생산물,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인권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4. 다국적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

5.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규모, 성격, 경영 상황과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상당 주의를 해야 한다.

6. 다국적기업은 자신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해온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하다.

V. 고용 및 노사관계

다국적기업은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 노사관계 및 고용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 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국제 노동 관행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a)다국적기업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 기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b)다국적기업은 단체 교섭을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기구를 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c)다국적기업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금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긴급한 문제인 최악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d)다국적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을 근절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경영 operation 현장에서 강제노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다국적기업은 경영operation 전체가 고용에 있어서 기회와 처우의 균등 원칙에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과 그 밖의 지위를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4. a)다국적기업은 진출국의 비교가능한 사용자가 지키는 수준보다 더 불리하지 않은 고용 및 노사관계 기준을 지켜야 한다.

b)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경영을 하는 경우, 비교 가능한 사용자가 없는 경우,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 수준,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최소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VI. 환경

1. b)다국적기업은 측정 가능한 목적의 수립하고, 적절한 경우, 환경적인 performance 개선과 자원 사용resource utilisation의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위 목표는 관련 국가 정책과 국제적인 환경 commitments와 일관되어야 한다.

2. a)다국적기업은 기업의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 및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되, 적시에, 적절하게 뿐 아니라 측정가능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증가능하게 제공해야 한다.

3. 다국적기업은 의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제조과정, 제품,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예견 가능한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만일 피할 수 없다면 완화시키기 위해서), 평가하고 대처해야 한다.

6.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함으로서 (기업의 수준에서, 적절한 경우, 공급 업체의 수준에서까지) 기업의 환경 수행performance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b)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서비스와 제품의 공급과 개발

c)다국적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도모(여기에는 온실가스배출량, 생물다양성, 자원효율성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d)다국적기업은 배출량 감소, 효율적인 자원 사용과 재활용, 독성 물질 사용 자체 및 대체제 개발에 관한 전략, 생물 다양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의 환경 수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평가.

VII. 뇌물방지, 뇌물요청 및 강요

다국적기업은 뇌물의 요청과 강요에 저항해야 한다. 특히,

1. 다국적기업은 공무원이나 거래 상대방 직원에게 '부적절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의하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다국적기업은 공무원이나 거래상대방의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수락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국적기업은 에이전트, 다른 거래인, 컨설턴트, 대리인, 판매업자, 합작투자 파트너 등 제3자를 공무원이나 거래상대방의 직원 혹은 그들의 친척이나 사업관계자에게 연락하는 수단으로 삼아 부적절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다국적기업은 뇌물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통제, 기업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채택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 통제, 기업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는 (기업의 지정학적 위치 혹은 산업 분야와 같이) 기업이 처한 개별적인 환경, 특히 기업이 직면한 뇌물 위험에 대처하는 '위험 평가에 기반'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내부통제, 기업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에는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 기록과 기장과 회계를 하도록 하고, 금품 수수의 목적으로 혹은 금품 수수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무 및 회계 절차 시스템을 포함한다.

기업의 내부 통제, 기업 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가 계속 효과를 갖고 기업이 뇌물요청 및 강요에 연루되는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앞에서 말한) 개별적인 환경과 뇌물의 위험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3. 다국적기업은 내부 통제, 기업 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인) 소액의 급행료small facilitation payments의 사용을 좌절시키거나 금지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급행료가 지급된 경우,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한다.

4. 기업이 직면하는 특정한 뇌물 위험을 고려하여 에이전트를 정기적으로 또한 적절하게 감독할 뿐 아니라 에이전트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타당하게 문서화된 상당 주의(실사)를 기울여야 한다. 에이전트에 대한 보스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국영 기업과의 거래에 관여한 에이전트의 명부는 정보 공개 요건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관할 당국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다국적기업은 뇌물과 싸우기 위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고 방법에는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내부 통제, 기업 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공개하는 포함한다.

6. 다국적기업은 회사 정책 뿐 아니라 내부 통제, 기업 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에 대한 피용자의 인식과 준수를 제고해야 한다.

7. 다국적 기업은 불법적인 기부를 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기부를 할 때는 철저하게 공적으로 공개하는 요건을 따라야 하고 상급 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VIII. 소비자 이익

2. 다국적기업은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하다면, 그 성분, 안전한 사용 방법, 환경적인 특성environmental attributes, 유지, 보관 그리고 폐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정확하고, 입증가능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3. 다국적기업은 소비자가 불필요한(undue가 아니라 unnecessary) 비용이나 부담 없이, 공정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적시에, 효과적으로, 법원을 통하지 않고 분쟁 해결 방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다국적기업은 소비자가 i)복잡한 제품,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ii)자신의 그러한 결정이 미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iii)지속가능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6. 다국적기업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뿐 아니라 기업이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퍼뜨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7. 다국적기업은 기만적인 시장관행을 방지하고 막으며, 제품의 소비, 사용,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공공 당국과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8. 다국적기업은 상기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i)취약하고 불리한 소비자들의 필요와 ii)전자 상거래가 소비자에게 초래할 특정한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IX. 과학 및 기술

4. 기술을 이전할 때 진출국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X. 경쟁

1. 다국적기업은 적용가능한 모든 경쟁법과 규율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되, 기업의 활동이 어느 관할영역에서 반경쟁적 (해악이 아니라)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관할영역의 경쟁법을 고려해야 한다.

2. 다국적기업은 경쟁자들과 반경쟁적인 합의를 체결하거나 그러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에는 가격 고정, 입찰 담합 등이 포함된다.

3. 다국적기업은 경쟁을 조사하는 당국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조사 당국 사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서, 적절한 경우, ‘비밀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수단의 사용을 고려함으로써 당국에 협조를 해야 한다.

4. 다국적기업은 피용자가 경쟁법과 규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제고해야 하며, 특히, 기업의 고위 관리자를 교육해야 한다.

XI. 조세

1. 다국적기업은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의 조세법과 규율의 조문과 정신을 (에 따라 행동하도록

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아니라)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기업이 합법적으로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 조세법을 준수한다는 것에는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요구한 또는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관련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2. 다국적기업은 세금 관리와 세금 준수를 '위험 관리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위원회는 세금 위험 관리 전략을 채택해서 세금과 관련된 재무 리스크, 규제 리스크, 평판 리스크가 온전히 확인되고 평가될 수도록 해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 이행절차>

이사회는 투자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I. 국내연락사무소

4. 수락국들은 내부적인 예산 우선사항과 관행들을 고려하면서 국내연락사무소가 맡은 채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연락사무소가 이용 가능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마련한다.

II. 투자위원회

3. 투자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증진시키고 활동 영역을 조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항들에 대해 비수락국과 관계를 맺는다. 또한 가이드라인과 그 원칙 및 기준의 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비수락국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투자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권해석의 책임이 있다. 특정 사안과 관련된 (기업 뿐 아니라 다른) 당사자가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 그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5. 투자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의 기능적 동등성을 고양하기 위해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

7. 투자위원회는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는데, 그 때 국내연락사무소의 보고서 뿐 아니라 OECD Watch의 견해도 고려해야 한다.

8. 투자위원회는 다국적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대책적인proactive 의제를 국내연락사무소와 함께 마련'한다. 특히 투자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의 맥락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과정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특정 상품, 지역, 부문 또는 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자문기구, OECD Watch, 다른 국제 파트너,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OECD 가이드라인 이행 절차 지침>

I. 국내연락사무소

A. 제도적인 설계

수락국은 국내연락사무소 조직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지만, 가이드라인의 효과성 제고와 기능적 동등성이라는 목적과 일치하게 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1.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이 담고 있는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수 있고, (수락국 정부에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유지하면서) 공평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B. 정보 및 홍보

2.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그 이행 절차에 대한 인식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고해야 한다.

C.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행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공평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국내연락사무소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제기된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효율적이고, 적시에,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 국내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1. 국내연락사무소는 제기된 이슈가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1차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이슈를 제기한 당사자 뿐 아니라)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국내연락사무소는 (이슈 해결)절차 종결 단계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민간한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그러한 절차의 결과를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a)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기된 이슈가 심도 있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성명서를 발행한다. 그 진술서에는 최소한 제기된 이슈와 국내연락사무소가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b) 당사자들이 제기된 이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 보고서에

서는 최소한 제기된 이슈와 국내연락사무소가 당사자들을 지원하면서 사용한 절차들, 언제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합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c)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서를 발한다. 성명서는 최소한 제기된 이슈와 국내연락사무소가 그러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 및 국내연락사무소가 당사자들을 지원하면서 사용하려고 한 절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국내연락사무소는, 적절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하며, 이러한 권고는 성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성명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할 수 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적시에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4. 국내연락사무소는 민간한 기업 및 다른 정보를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절차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모두 공개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거나, 국내법에서 그와 반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한 다른 당사자가 그 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이나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II. 투자위원회

2. 투자위원회는 국내연락사무소의 기능적 동등성을 제고하고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e) 국제적인 파트너와의 협력

f)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항과 그 이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수락국과 관계를 맺기

3. 투자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고려할 수 있다.

5. 투자위원회는 OECD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데, 위 사무국은,

a)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홍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국내연락사무소를 위한 중앙정보센터 역할을 한다.

b) 국내연락사무소들의 활동과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한 최신의 경향과 관행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한다.

c) 국내연락사무소의 역량 강화와 훈련뿐 아니라 자발적인 동료 평가를 포함한 동료학습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d) 국내연락사무소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e) 관련 국제 포럼과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비수락국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국내연락사무소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의 확대³⁾

이번 개정으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전반적으로 넓힌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많은 경우 ‘적절한 경우’, ‘실행가능한 경우’라는 단서를 다는 경우가 많았고, ‘한다shall’, ‘해야한다should’라고 표현하기 보다 ‘권장된다encouraged’, ‘노력해야 한다’should make effort’라는 완화된 표현이 많음⁴⁾)

개념과 원칙 파트에서 다국적기업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반정책 파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자체의 활동에 의한 영향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사업적 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향도 규율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하청업체, 공급업체까지 적용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다수 신설하였다(예를 들어 일반정책 A. 13.과 일반정책 B. 2.)

고용 파트에서 다국적기업은 경영operation ‘전체’가 고용에 있어서 기회와 처우의 균등 원칙에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과 ‘그 밖의 지위’를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경영 전체에서 고용과 관련해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차별의 사유에 그 밖의 지위라는 표현을 신설하여 고용 파트에서 차별사유를 예시적인 것으로 분명히 하였다.

정보공개 파트에서는 다국적기업이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환경 파트에서 기업의 환경적 수행의 범위를 공급업체까지 확대하였다(그러나 관련 활동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에서 그침)

뇌물 파트에서 뇌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도 확대를 하였다(뇌물을 약속하는 것도 금지하였고, 뇌물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뇌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함)

3)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규정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예를 들어 전문에서 수락국은 OECD 가이드라인 이행에 있어 구속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고 하고 있고 조세파트에서도 조세법 준수의무를 강화하였다.

4) 예를 들어, 환경파트에서 “다국적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온실가스 감축 등)’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수준에서, ‘적절한 경우’, ‘공급 업체의 수준에서까지’) 기업의 환경 수행performance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그 적용 범위를 위와 같이 넓혔을 뿐 아니라 위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책임과 관련해서 수락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문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행절차 파트에서 투자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사항들에 대해 비수락국과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다.

2. 인권에 대한 강조

인권에 대한 독립적인 파트를 신설하고 인권에 대한 여러 부분에서 강조가 된 것 역시 성과이다.

인권파트에서 다국적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일반정책 파트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의무가 있다는 것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존 러기의 기업과 인권의 프레임워크 또는 그 이행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진전된 태도로 보여진다. 특히 2000년 가이드라인은 '진출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인권 보호 의무 주체(국가)의 관점에서 규정하여 마치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에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업이 직접적으로 인권 존중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규정함. 그러나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는 duty로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는 should로 규정한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임].

기업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영향권, 연루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인권 존중의 범위가 인권 침해 야기, 기여하는 것을 피할 것,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사업상 관계에 의해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완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상당주의의무를 인정하였다. 또한 (주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주민,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를 언급하였다.

다른 곳에서도 인권이 포함되었는데, 예를 들어 일반 원칙 파트에서 “다국적 기업은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금융 인센티브 뿐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규범 등이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주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구제 부분이 취약하지만)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무), 구제⁵⁾의 프레임워크와 같은 맥락에서 규정하였다. 구제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이행절차(절차 지침) 파트의 국내연락사무소 강화 부분에서 다루었다.

5) 인권파트에서 “다국적기업은 자신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해온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소비자이익 파트에서 구제와 관련해서 “다국적기업은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담 없이, 공정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적시에, 효과적으로, 법원을 통하지 않고 분쟁 해결 방법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3. 실질적인 최저 임금

제5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경영을 하는 경우, 비교 가능한 사용자가 없는 경우,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 수준,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최소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을 가지고 사실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법적최저임금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면책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그러나 무엇이 기본적인 생계인지 규정하지는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음)

4. due diligence 도입

일반정책 파트에서 다국적 기업은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파악하고) 회피하는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묵인하지 말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완화에 노력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또한 상당주의 개념을 리스크 관리 시스템 속에 포함 시키도록 함)

5. 투명성 제고

여러 분야에서 다국적기업과 국내연락사무소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책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정보 공개시 국가별로 공개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공개 파트에서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 상태, 실적 뿐 아니라 ‘소유관계 및 지배구조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⁶⁾에 대한’ ‘정확하고’ 정보가 적기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예전에는 relevant한 것으로 한정되었으나 지금은 모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여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신뢰할 만한reliable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accurate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정기적regular이라는 표현은 적시timely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삭제한 것으로 보임).

이행절차(절차지침) 파트에서 국내연락사무소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분쟁 해결 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이든 결과를 공개하되 거기에는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연락사무소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가 마친 후에 적시에 투자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는데 이 모두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6) 주석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는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그 정보의 사용자들의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한다.

환경 파트에서 200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 및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되,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측정가능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증가능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뇌물파트에서는 다국적기업은 뇌물과 싸우기 위한 투명성 제고 방법을 구체화 하여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내부 통제, 기업 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기부의 경우에는 공개하고 상급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소비자 이익 파트에서 다국적기업은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하다면’, 그 성분, 안전한 사용 방법, ‘환경적인 특성environmental attributes’, 유지, 보관 그리고 폐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정확하고, ‘입증가능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6.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확대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해서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를 확대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 동안 채굴 산업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던 공동체, 특히 선주민 공동체와의 협의와 동의 절차에 관한 언급이 없음. ‘자유롭고, 선행적이며, 정보가 주어진 동의’ 원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일반정책 파트에서 “지역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고려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engage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해관계자와의 형식적인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주목할 만 하다(그러나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의 뜻과 의미있는 기회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행절차(절차 지침) 파트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되어 (기업 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권해석을 투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그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음). 특히 투자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적 과정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특정 상품, 지역, 부문 또는 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자문기구, OECD Watch, 다른 국제 파트너,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도록 하였다.

7. 최신의 논의와 국제 규범과 원칙 반영

전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인 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관련 국제 규범과 원칙이 반영되었다는데 그 성과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주민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관련 논의와 원칙이 반영되지

못하였는데, 채굴산업과 관련해서 선주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적절히 규율하지 못함).

일반정책 파트에서 다국적기업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존중을 통해 인터넷 자유를 증진하기 위 한 지원하도록 권하고 있고, 환경파트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원 사용resource utilisation의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다양성 보장과 관련한 다수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소비자보호 파트에서는 다국적기업이 관련 원칙을 적용할 때 ‘전자 상거래’가 소비자에게 초래할 특정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뇌물파트에서 자세한 규정을 신설(에이전트를 매개로 뇌물이 오고 가지 않도록 에이전트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고용 후에 감독까지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과의 거래에 참여한 에이전트 명부 보존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의미있는 개정임)하였는데, 그것은 2009년 이사회회의 ‘반뇌물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그러나 반부패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패에 대해 규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 파트 등이 존 러기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이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으며, 고용 및 노사관계 파트 1977년 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 선언을 반영하였다. 피용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었으며, 노동조합 선택과 설립의 자유, 단체교섭권을 규정하였다(개정전에는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거나 선의의 피용자 대표들에 의해서 대표될 피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이라는 표현도 없이 고용조건에 대해 건설적인 협상을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애매하게 규정되었음). 또한 ‘고용에 있어서 기회와 처우의 균등 원칙,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 원칙’(다국적기업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금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긴급한 문제인 ‘최악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을 규정하였다.

8. 국내연락사무소 강화

국내연락사무소가 강화된 것 역시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분쟁 해결 절차가 끝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진정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은 크게 약화된 것이며, 권고와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내연락사무소의 모니터링 절차가 없음)

국내연락사무소의 인적, 물적인 자원을 보강을 위해 수락국은 국내연락 사무소에 지원하도록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shall로 규정하고 있음) 하고 있는(그러나 내부적인 예산 우선순위 관행을 고려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음). OECD 사무국은 국내연락사무소 역량 강화와 훈련을 활성화 시키도록 되어 있다.

국내연락사무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이 담고 있는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수 있고, 공평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되고 구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공평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그러나 너무 추상적인 규정임).

국내연락사무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OECD사무국은 자발적인 동료 평가를 포함한 동료 학습 활동을 활성화 한다(동료 평가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어서 국내연락사무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기능을 할지는 의문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연락사무소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분쟁 해결 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이든 결과를 공개하되 거기에는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거기에 timeframe을 둔 것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친 후에 적시에 투자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이 한국의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별로 갖는 의미

개정 가이드라인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 이해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연락사무소가 이용 가능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개정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다국적기업과 국내연락사무소이다. (다국적기업과 국가연락사무소의 변화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가운데 가이드라인 개정 때문에 다국적기업과 국내연락사무소가 겪게 될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국적기업

-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주의를 다해야 한다.
- 지역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engage 한다.
-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
- operation 현장에서 강제노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업은 소유관계 및 지배구조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발도상국에서 경영을 하는 경우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 수준,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임금이 최소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 기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단체 교섭을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기구를 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금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긴급한 문제인 최악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경영operation 전체가 고용에 있어서 기회와 처우의 균등 원칙에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과 그 밖의 지위를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적절한 경우, 환경적인 performance 개선과 자원 사용resource utilisation의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기업의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 및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되, 적시에, 적절하게 뿐 아니라 측정가능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증가능하게 제공해야 한다.
- 공무원이나 거래 상대방 직원에게 '부적절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의하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 다국적기업은 뇌물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통제, 기업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채택하고 개발해야 한다.
-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 기록과 기장과 회계를 하도록 하고, 금품 수수의 목적으로 혹은 금품 수수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무 및 회계 절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소액의 급행료small facilitation payments의 사용을 좌절시키거나 금지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급행료가 지급된 경우,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한다.
- 기업이 직면하는 특정한 뇌물 위험을 고려하여 에이전트를 정기적으로 또한 적절하게 감독할 뿐 아니라 에이전트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타당하게 문서화된 상당 주의(실사)를 기울여야 한다.
- 뇌물과 싸우기 위해 투명성 제고 방법으로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내부 통제, 기업 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공개한다.
- 정치적인 기부를 할 때는 철저하게 공적으로 공개하는 요건을 따라야 하고 상급 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하다면, 그 성분, 안전한 사용 방법, 환경적인 특성environmental attributes, 유지, 보관 그리고 폐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정확하고, 입증가능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 다국적기업은 세금 관리와 세금 준수를 '위험 관리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해야 한다.

2. 국내연락사무소

-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그 이행 절차에 대한 인식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고해야 한다.
- 가이드라인이 담고 있는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수 있고, 공평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공평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이슈에 대해 적시에 절절한 내용을 담아 당사자에 알려주고 투자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결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실제적인 규정에 있어서 상당부분 성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권 파트를 신설하는 등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강화 되었고,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due diligence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이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만한 규정이 너무 미비해서 그러한 개선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도 없고, 국내연락사무소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없다. 이처럼 가이드라인의 실제적인 규정을 위반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국내연락사무소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국내연락사무소가 진행하는 분쟁 해결 절차가 끝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진정한 것이 사실인지,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 준수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또한 위 절차를 통해 나온 합의나 국내 연락사무소의 권고의 이행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방법도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개정 가이드라인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 이해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연락사무소가 이용 가능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개정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다국적기업과 국내연락사무소이다.(다국적기업과 국가연락사무소의 변화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가운데 가이드라인 개정 때문에 다국적기업과 국내연락사무소가 겪게 될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국적기업

-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주의를 다해야 한다.
- 지역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engage 한다.
-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
- operation 현장에서 강제노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업은 소유관계 및 지배구조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발도상국에서 경영을 하는 경우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 수준,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임금이 최소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 기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단체 교섭을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기구를 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금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긴급한 문제인 최악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경영operation 전체가 고용에 있어서 기회와 처우의 균등 원칙에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인종, 피부색깔,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과 그 밖의 지위를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적절한 경우, 환경적인 performance 개선과 자원 사용resource utilisation의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기업의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 및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되, 적시에, 적절하게 뿐 아니라 측정가능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증가능하게 제공해야 한다.
- 공무원이나 거래 상대방 직원에게 '부적절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의하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 다국적기업은 뇌물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통제, 기업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채택하고 개발해야 한다.
-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 기록과 기장과 회계를 하도록 하고, 금품 수수의 목적으로 혹은 금품 수수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무 및 회계 절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소액의 급행료small facilitation payments의 사용을 좌절시키거나 금지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급행료가 지급된 경우,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한다.
- 기업이 직면하는 특정한 뇌물 위험을 고려하여 에이전트를 정기적으로 또한 적절하게 감독할 뿐 아니라 에이전트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타당하게 문서화된 상당 주의(실사)를 기울여야 한다.
- 뇌물과 싸우기 위해 투명성 제고 방법으로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내부 통제, 기업 윤리, 준법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공개한다.
- 정치적인 기부를 할 때는 철저하게 공적으로 공개하는 요건을 따라야 하고 상급 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하다면, 그 성분, 안전한 사용 방법, 환경적인 특성environmental attributes, 유지, 보관 그리고 폐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정확하고, 입증가능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 다국적기업은 세금 관리와 세금 준수를 '위험 관리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해야 한다.

2. 국내연락사무소

-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그 이행 절차에 대한 인식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고해야 한다.
- 가이드라인이 담고 있는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수 있고, 공평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공평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가이

드라인의 원칙과 기준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이슈에 대해 적시에 절절한 내용을 담아 당사자에 알려주고 투자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결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실제적인 규정에 있어서 상당부분 성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권 파트를 신설하는 등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강화 되었고,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due diligence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자발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soft law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행절차가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특히 NCP가 혁신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은 우리가 어떤 NCP를 가지고 있는가, NCP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개선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이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만한 규정이 너무 미비합니다(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NCP의 역할이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NCP에 관한 부분에서는 너무 미흡해서 실제적인 규정의 개선이 거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CP 조직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만 새로 두었고 실제로 중립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일한 진정 메커니즘인 NCP가 담당하는 분쟁해결 절차(진정절차)에 대해서도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비록 다국적기업이 분쟁 해결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진정한 것이 사실인지,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 준수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통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도록되어 있습니다. NCP는 진정절차에서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권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방법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절차에 due process절차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인권 증진의 효과도 있지만 잠재적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에 대한 구제수단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그 나라의 구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구제에 효과가 없고, 다국적기업의 등록국에서 구제를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다국적 기업을 규율할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많은 경우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세계인권선언은 인권존중의 주체를 국가 뿐 아니라 모든 entity로 이미 60년 전에 규정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권보호의무의 주체는 국가 뿐이다라는 옛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인권에 관해 규범의 구속력만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규범의 구속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규범 이행의 효과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NCP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NCP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지 개정된 문구에 얽매어 최소한의 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예측가능성 등이 실제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 개정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네델란드 NCP와 같이 best practice를 하는 곳을 찾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논의가 NCP 개혁의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